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정의 목적인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수요 확대 명시
 -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용어 정의
- 시장·농업인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시설비용과 포장재 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과 각종 대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전한 식품 생산 및 판매, 식품가공시설 기준 준수와 위생 관리 등 농업인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
-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규정

○ 시설기준 및 점검 (안 제6조)

-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을 할 경우의 시설기준을 명시
- 시장의 시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함을 규정

○ 사후관리 (안 제7조)

-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함을 규정

○ 위생관리 (안 제9조)

- 가공품 이력 추적을 위한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의무 명시
- 식품안전을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장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기술,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게 식품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7조 사후 관리, 제9조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